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람	기 관 의 장

공 보

제788호 2013년 7월 29일(월)

조 례

○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····· 2
○ 속초시자매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····· 5
○ 속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폐지조례 ····· 7

규 칙

○ 속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····· 8

회 람									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3년 7월 29일

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

속초시조례 제 2331호

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노인복지법」제23조 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노인”이란 만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.
2. “노인일자리창출”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노인일자리전담기관”이란 「노인복지법」제23조의2에 따라 속초시가 설치·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속초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 및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창출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.

1.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
2. 노인일자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
3.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4.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5.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하는 때에는 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·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)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·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(이하 “노인일자리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
2.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
3.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
4.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
5.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

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준한다.

제8조(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) 시장은 시 소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이나 출자·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할 수 있다.

제9조(생산품 우선 구매)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,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·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예산지원 등)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위탁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, 절차 등은 「속초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시장은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국·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자매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3년 7월 29일

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

속초시조례 제 2332호

속초시자매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2항중 “3명”을 “1명”으로 하며, 제4항중 “기획협력담당이 되며”를 “교류업무 담당주사가 되며”로 한다.

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, 감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8조제2항중 “연 2회로 상·하반기 각 1회씩 소집”을 “연 1회 개최”로 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, 감사 1인을 포함한 3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위원은 시의원 3명을 포함하여 국내·외 교류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. ③위원장,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기획협력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류업무담당자로 한다.	제5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, 감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위원은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국내·외 교류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. ③위원장,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교류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류업무담당자로 한다.
제8조(회의) ①(생략) ②정기회는 연 2회로 상·하반기 각 1회씩 소집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	제8조(회의) ①(생략)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제9조(소위원회)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국내·외 자매도시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4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소위원회는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	제9조 <삭제>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3년 7월 29일

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

속초시 조례 제 2333호

속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폐지조례

속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속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3년 7월 29일

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

속초시 규칙 제 1297호

속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

속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시행규칙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